

규정(EU) 2022/2240을 시행하는 위원회

2022년 10월 20일

자격 있는 전자 인감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행 규정(EU) 2021/1378,
시행 규정(EU) 2021/2119 및 시행 규정(EU) 2021/2307을 개정합니다.

(EEA와 관련된 텍스트)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여,

2018년 5월 30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의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EU) 2018/848 및 이사회 규정(EC) 834/2007 폐지를 고려합니다.¹⁾, 특히 그 제35조(10), 제43조(7) 및 제45조(4)항,

반면:

- (1) 규정(EU) 2018/848의 제35조(1)항(a)에 따라, 유능한 당국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이 운전자 또는 운전자 그룹에 제공하는 인증서는 가능한 한 전자 형태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시행 규정(EU) 2019/1715에 언급된 전자 무역 통제 및 전문가 시스템(TRACES)²⁾은 규정(EU) 2018/848의 제35조에 언급된 인증서를 전자 형태로 발급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1/2119³⁾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TRACES를 사용하여 (EU) 규정 2018/848의 제35조에 언급된 인증서를 전자 형식으로 발급하도록 요구합니다.
- (2) 운전자 및 운전자 그룹에 전달된 인증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10/2014호(27)조에 정의된 대로 적격 전자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⁴⁾ 해당 인증서 발급을 위해, 관련 모든 주체가 적격 전자 인감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EU) 2018/848 제35조에 언급된 인증서에 2023년 7월 1일부터 적격 전자 인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 (3) 따라서 규정 (EU) 2021/2119 시행도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 (4)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1/1378 제1조 제1항 및 제2항(a)에 따라⁵⁾ 규정 (EU) 2018/848의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해당 규정의 제45조(1)항 (b)(i)에 언급된 통제를 받았던 제3국의 운전자, 운전자 그룹 및 수출자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TRACES를 사용하여 전자 형식으로 발급되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¹⁾ OJ L 150, 2018년 6월 14일, p. 1.

²⁾ 2019년 9월 30일 공식 통제를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과 그 시스템 구성 요소의 기능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EU) 2019/1715 위원회 시행 규정('IMSOC 규정')(OJ L 261, 14.10.2019, p. 37).

³⁾ 2021년 12월 1일의 위원회 시행 규정 (EU) 2021/2119는 운전자 및 운전자 그룹에 요구되는 특정 기록 및 신고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에 따른 인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하고 제3국의 운전자, 운전자 그룹 및 수출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 시행 규정 (EU) 2021/1378을 개정합니다(OJ L 430, 2.12.2021, p. 24).

⁴⁾ 2014년 7월 23일 내부 시장에서의 전자 거래를 위한 전자 식별 및 신탁 서비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10/2014호(OJ L 257, 28.8.2014, p. 73).

⁵⁾ 2021년 8월 19일의 (EU) 2021/1378 위원회 시행 규정은 유기농 및 전환 제품을 연합으로 수입하는 제3국의 사업자, 사업자 그룹 및 수출자에게 발급되는 인증서와 관련된 특정 규칙을 정하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에 따라 인정된 관리 기관 및 관리 기관 목록을 수립합니다(OJ L 297, 20.8.2021, p. 24).

(5) 해당 사업자, 사업자 그룹 및 수출자에게 전달된 인증서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인증서 발급을 위해 자격 있는 전자 인감의 사용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자격 있는 전자 인감에 대한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국의 사업자, 사업자 그룹 및 수출자의 인증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자격 있는 전자 인감을 부착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시행 규정(EU) 2021/1378도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7) 종이 검사 증명서 및 종이 검사 증명서 추출물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1/2306에 따라 손으로 서명한 종이에 기재됨.⁽⁶⁾,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2/2238⁽⁷⁾ 모든 관계자가 적격 전자 인감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30일까지 과도기 조항을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은 위원회 이행 규정(EU) 2021/2307에 명시된 검사 인증서 추출물 모델 완성을 위한 메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⁸⁾. 위임 규정(EU) 2022/2238도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적격 전자 인장이 장착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승인된 사람이 18번 상자에 적격 전자 인장을 적용하지 않고 고도 전자 형식의 검사 인증서를 TRACES에 생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8) 따라서 규정(EU) 2021/2307을 시행하는 것도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9) 종이증명서에 대한 과도기 기간 만료 및 2022년 6월 3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면제로 인해, 이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10) 이 규정에 규정된 조치는 유기생산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제1조

시행 규정(EU) 2021/2119에 대한 수정

시행 규정(EU) 2021/2119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제1조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규정(EU) 2018/848의 제35조(1)항에 언급된 인증서에는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EU) 제910/2014의 제3조(27)항에 정의된 대로 자격 있는 전자 인장이 찍혀야 합니다(*)'.

(*) 2014년 7월 23일 전자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10/2014호
내부 시장에서의 전자 거래를 위한 식별 및 신뢰 서비스 및 지침 1999/93/EC의 폐지(OJ L 257, 28.8.2014, p. 73).'

(2) 제5조 제3항 뒤에 다음 항을 신설한다.

'제1조 2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6) 2021년 10월 21일자 유럽 의회와 위원회 규정(EU) 2018/848을 보완하는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1/2306(연합으로 수입할 예정인 유기농 제품 및 전환 중 제품에 대한 공식 통제 및 검사 인증서에 관한 규칙(OJ L 461, 27.12.2021, p. 13)).

(7) 2022년 8월 22일자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2/2238은 검사 인증서 및 그 발취문에 대한 과도기 조항과 우크라이나에서 발급된 검사 인증서에 대한 과도기 조항에 관한 위임 규정(EU) 2021/2306을 개정한 것입니다(이 관보의 3페이지 참조).

(8) 2021년 10월 21일 발효된(EU) 2021/2307 위원회 시행 규정은 연합으로 수입할 예정인 유기 및 전환 제품에 필요한 문서 및 통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OJ L 461, 27.12.2021, p. 30).

제2조

시행 규정(EU) 2021/1378에 대한 수정

시행 규정 (EU) 2021/1378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제1조 제2항 (a)에 다음의 (iii)항을 추가합니다.

'(iii) 규정(EU) 제910/2014호 제3조(27)항에 정의된 대로 적격 전자 인장을 부착해야 합니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

(*) 2014년 7월 23일 전자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910/2014호
내부 시장에서의 전자 거래를 위한 식별 및 신뢰 서비스 및 지침 1999/93/EC의 폐지(OJ L 257, 28.8.2014, p. 73).'

(2) 제3조에서 제3항 뒤에 다음 항을 삽입합니다: '제1조 제2항 (a)(iii)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부록 I은 이 규정의 부록에 있는 텍스트로 대체됩니다.

제3조

시행 규정(EU) 2021/2307에 대한 수정

(EU) 2021/2307 시행 규정 별지 제2부, 12번 상자와 관련된 주석의 네 번째 문단 및 13번 상자와 관련된 주석의 두 번째 문단에
서 '2022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2022년 11월 30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4조

발효 및 적용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유럽연합 공식 저널.

제3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2022년 10월 20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위원회를 위해

대표

우르줄라 폰 데르 라이엔

부록

'부록 I

인증서 모델

제3국의 운영자, 운영자 그룹 및 수출자를 위한 인증서 유기농 제품 또는 전환 중 제품

1부: 필수 요소

1. 문서번호	2. (적절한 것을 선택하세요) ☐ 연산자 ☐ 운영자 그룹 - 10항 참조 수출자 ☐
3. 운영자, 운영자 그룹 또는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4. 운영자, 운영자 그룹 또는 수출자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코드 번호:
5. 운영자, 운영자 그룹 또는 수출자의 활동 또는 활동들(적절한 대로 선택):	
☐ 생산	
☐ 준비	
☐ 분포	
☐ 저장 중	
☐ 수입	
☐ 내보내다	
6.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 제35조(7)항에 언급된 제품 범주 또는 제품 범주들 ⁽¹⁾ 및 생산 방법(적절한 대로 선택):	
(a) 씨앗 및 기타 식물 생식 물질을 포함한 가공되지 않은 식물 및 식물 제품 생산 방법:	
☐ 전환기간을 제외한 유기생산 전환기간 동안의 생산	
☐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b) 가축 및 가공되지 않은 가축 생산품 생산방법 :	
☐ 전환기간을 제외한 유기생산 전환기간 동안의 생산	
☐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c) 조류 및 미가공 수산양식 제품 생산 방법:	
☐ 전환기간을 제외한 유기생산 전환기간 동안의 생산	
☐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1)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2018년 5월 30일) 및 이사회 규정(EC) 834/2007을 폐지함(OJ L 150, 14.6.2018, p. 1).

(d)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산양식 제품을 포함한 가공 농산물 생산방법: ☐ 유기제품 생산 전환제품 생산 유기생산과 비유기생 ☐ 산 ☐	
(e) 먹이다 생산 방법: ☐ 유기제품 생산 전환제품 생산 유기생산과 비유기생 ☐ 산 ☐	
(f) 와인 생산 방법: ☐ 유기제품 생산 전환제품 생산 유기생산과 비유기생 ☐ 산 ☐	
(g) 규정 (EU) 2018/848 부록 I에 나열된 기타 제품 또는 이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생산 방법: ☐ 유기제품 생산 전환제품 생산 유기생산과 비유기생 ☐ 산 ☐	
7. 제품 디렉토리:	
제품명 및/또는 협의회 규정(EEC) 제2658/87호에 언급된 결합 명명법(CN) 코드²⁾ 규정 (EU) 2018/848 범위 내 제품의 경우	☐ 본질적인 ☐ 변환 중
이 문서는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1/1378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³⁾ 운전자, 운영자 그룹 또는 수출자(적절한 경우 선택)가 규정(EU) 2018/848을 준수함을 인증합니다.	
8. 날짜, 장소 발급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을 대신하여 이름과 서명, 또는 적격 전자 인감:	9. 인증서 유효 기간은[날짜 입력]부터[날짜 입력]까지입니다.

(2) 1987년 7월 23일 관세 및 통계 명칭과 공통 관세율에 관한 이사회 규정 (EEC) 제2658/87호(OJ L 256, 7.9.1987, p. 1).

(3) 2021년 8월 19일의 (EU) 2021/1378 위원회 시행 규정은 유기농 제품을 연합으로 수입하는 제3국의 사업자, 사업자 그룹 및 수출자에게 발급되는 인증서에 관한 특정 규칙을 정하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에 따라 인정된 관리 기관 및 관리 기관 목록을 수립합니다(OJ L 297, 20.8.2021, p. 24).

10. 규정(EU) 2018/848 제36조에 정의된 운영자 그룹 구성원 목록

회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회원 식별 형태

2부: 특정 선택 요소

인증서를 운영자, 운영자 그룹 또는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이행 규정(EU) 2021/1378에 따라 완료해야 하는 하나 이상의 요소

1. 제품의 수량

규정(EU) 2018/848의 범위 내 제품에 대한 규정(EEC) 2658/87에 언급된 제품명 및/또는 CN 코드	☐ 본질적인 ☐ 변환 중	킬로그램, 리터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단위 수로 추정된 수량

2. 토지에 대한 정보

제품명	☐ 본질적인 ☐ 변환 중 ☐ 비유기농	표면적 (헥타르)

3.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활동을 수행하는 건물 또는 단위 목록

주소 또는 지리적 위치	5항에 언급된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 1부

4.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수행하는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와 해당 활동이 자체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지 또는 하청업체가 다른 운영자를 위해 활동을 수행하는 하청업체로서 수행되는지 여부, 하청업체가 수행한 활동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는지 여부

5항에 언급된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 1부	☐ 자체 목적을 위한 활동 수행 하청업체가 수행한 활동에 ☐ 대해 책임을 지는 동안 다른 운영자의 하청업체로서 활동 수행

5. 하청업체 제3자가 수행하는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

5항에 언급된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 1부	☐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 ☐ 청업체 제3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유기 생산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목록(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해당 책임을 하청업체에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이름과 주소	5항에 언급된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 1부

7. 규정(EU) 2018/848 제46조(2)항(d)에 따른 통제 기관의 인증에 대한 정보

- (a) 인증기관의 이름
 (b) 인증증명서에 대한 하이퍼링크.

8. 기타 정보'